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기관별 선발 예정인원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임용예정기관(인원)
합 계			3개	94명	
제 1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호	간호	62	천안시 6, 공주시 20, 보령시 5, 아산시 4, 서산시 2, 논산시 1, 당진시 4, 금산군 5, 부여군 3, 서천군 3, 청양군 4, 홍성군 3, 예산군 2
			간호 (장애)	1	당진시 1
제 1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수의	수의	30	충청남도 16, 보령시 1, 아산시 3, 서산시 2, 논산시 3, 부여군 2, 홍성군 2, 태안군 1
	9급	속기	속기	1	당진시의회 1

- ※ 임용예정기관은 응시자격 요건에 따라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 ※ 임용예정기관을 충청남도로 선택하는 경우, 도에서 선발하는 예비자원으로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시·군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류별 시험과목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공개경쟁임용	8급	간호	간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경력경쟁임용	7급	수의	수의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9급	속기	속기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②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 여부 서면심사
-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 제출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시험 시간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과목수	시험 시간
공개경쟁임용	8급	간호	간호	5과목	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임용	7급	수의	수의	3과목	10:00 ~ 11:00 (60분)
	9급	속기	속기	2과목	10:00 ~ 10:40 (40분)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장애유형별 시험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붙임1' (장애인 응시생 등 편의지원 제공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문제의 출제

가. 도(道) 자체출제 :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전 과목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간호) : 전 과목

시 험 명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간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추가 면접을 할 경우에도 당해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각 목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

- 7급 수의(수의) : **거주지 제한 없음**
- 8급 간호(간호), 9급 속기(속기)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합니다.
- ※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불합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충족으로 불합격처리 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7급	20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8급, 9급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단, 7급 수의(수의) 직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5)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붙임 1' 『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getis11@korea.kr

* 충청남도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내용이 일부(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 제한됩니다.

〈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 제1회 공임 및 제1회 경임 : 2022. 2. 21.(월) ~ 2. 28.(월)

* 구분모집 유의사항

장애인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접수하여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 되오니, 구분모집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 등 자격요건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제 한 내 용
공개경쟁임용시험	8급	간호	간호	▶ 조산사, 간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7급	수의	수의	▶ 수의사
	9급	속기	속기	▶ 한글속기 1·2·3급

- 1)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을 보유한 사람 및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인 사람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제한하는 경우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24:00)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 : 2. 21.(월)~2. 25.(금) < 취소 : 2. 21.(월)~2. 28.(월) >	필 기	3. 30.(수)	4. 30.(토)	5. 20.(금)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면 접	5. 20.(금)	6. 2.(목)	6. 10.(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go.kr) 『행정-시험정보』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부터 접수 마감일 18:00 종료(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1) 8·9급 : 5,000원, 7급 : 7,000원
※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수수료) 소요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1) 사진파일 규격 : 파일형식 JPG, 크기 3.5cm×4.5cm, 해상도 100DPI 이상
- 2)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道, 시·군, 지방의회)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동일 날짜에 전국 동시 시행하는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접수 불가
-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직렬을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 3)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지자체, 지방의회)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사람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5)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6)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가산특전 입력기간에 반드시 가산특전의 종류, 자격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7)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참조)
- 8)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9)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10)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바랍니다.

9.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취득하고, 가산특전 등록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한 경우에 한합니다.

나. 가산특전 등록기간

등록 기간	등록 시간	등록 사항
2022. 4. 30.(토) 09:00 ~ 2022. 5. 3.(화) 24:00	기간 내 24시간 접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증서) 번호 등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며, 가산특전 등록기간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 2) 가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취업지원대상자가 “라”항의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라.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며, 가산특전 등록기간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상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 2) 가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다”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해당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마.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의 경우 가산특전 등록기간에 가산점 종류, 가산점 비율, 증서번호 등을 본인이 확인하여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3) 가산특전과 관련하여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임용예정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간호)
-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안의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11.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

- 가. 대상 시험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
- 나. 실시 방법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합격 인원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120% 선발
 - ※ 선발 예정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인원을 범위로 함
- 합격자 결정
 - (공개경쟁임용)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경력경쟁임용)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에서 5년 이내,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전출제한 기간

- 3년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 5년 :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 기재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검정색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포함)

※ 수정테이프 이외에 수정액, 수정스티커를 사용한 경우 당해 문항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모든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소지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신장비 등을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사.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하므로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이어야 합니다.

-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경임만 해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파.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성적 조회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하.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행정-시험정보」에 공고되므로 시험 단계별 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충청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 시험 관련 사항 : 충청도청 인사과 고시팀(☎ 041-635-3535)
- ☞ 원서접수 관련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 ☞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의사상자 확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